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03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오세희 · 전진숙 · 김종민
송옥주 · 이수진 · 전종덕
장철민 · 허성무 · 박정현
권향엽 · 전은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침해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는 반면, 현행 「상표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간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상 권리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의2 신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1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u> <u>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여 자기</u> <u>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u> <u>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u> <u>대하여 제115조제1항에 따른</u> <u>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u> <u>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u> <u>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u> <u>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u> <u>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u> <u>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u> <u>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u> <u>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u> <u>② 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침</u> <u>해행위에 대하여 제115조제1항</u> <u>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디</u> <u>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u> <u>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u> <u>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u> <u>로 변경할 수 있다.</u>